

# 캘리포니아의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 대한 초과근무 규정



YOUR LIFE  
YOUR CARE  
YOUR PEOPLE

캘리포니아 자기 결정 프로그램(SDP)에 참여하는 고용주로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과 시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과근무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귀하는 근로자에게는 정해진 임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주당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더 높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초과근무 수당은 정규 임금 비율의 1.5배(1.5x) 또는 2배(2x)입니다. 근로자의 정규 임금은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는 보상이지만, 보장된 보너스 및 기타 필수 급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정규 임금이 시간당 \$22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5배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33(\$22 x 1.5)가 됩니다.
- 2배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44(\$22 x 2)가 됩니다.

## 언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초과근무 규칙은 근로자가 참여자와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여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에 대해 정규 임금의 1.5배 지급:

-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시간
-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시간
- 일주일에 연속으로 일하는 7일째 되는 날의 첫 8시간

다음에 대해 정규 임금의 2배 지급:

- 하루 12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시간
- 일주일에 연속으로 일하는 7일째 되는 날의 8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시간

가족 구성원의 경우 예외 규칙:

근로자가 참여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이고 참여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대해서만 시간당 정규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시간

**참여자와 함께 거주하며** 입주 근로 면제 대상인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에 대해 정규 임금의 1.5배 지급:

- 하루 9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시간
- 일주일 근무일 중 6일째 및 7일째 날의 첫 9시간

다음에 대해 정규 임금의 2배 지급:

- 주중 6일째 및 7일째의 9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시간

입주 근로 가족 구성원의 경우 예외 규칙:

근로자가 참여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이고, 참여자와 함께 거주하며, 입주 근로 면제 대상인 경우:

- 하루 또는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면책 조항:**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요약 정보입니다. 참여자는 **캘리포니아 Wage Order 섹션 11**을 참조하거나 법률 자문을 통해 자세한 지침을 얻어야 합니다. **링크:** <https://www.dir.ca.gov/IWC/IWCArticle15.pdf>